

6.2(수)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.



- ▶ 2004. 5. 31 배포
- ▶ 총 4 쪽

## 보 도 자 료

- ▶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 
T E L : 2110-7080  
E-MAIL : epd01@chol.com  
F A X : 502-685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스리랑카, 베트남과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

☑ 스리랑카 6.1(화), 베트남 6.2(수), 양국 노동부 장관 방한하여 양해각서 체결

- 6월 1일(화) 14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Athauda Seneviratne 스리랑카 노동관계및해외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.
- 이어서 6월 2일(수)에도 Nguyen Thi Ha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- 지난 3.25 확정·발표된 「'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(4.23), 몽골(5.3)에 이어 양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.
- 스리랑카는 1977년 11월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'04년 3월말 현재 4,029명의 근로자(불법체류자 제외)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.

※ '93년 말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'04.3월말 현재까지 총7,374명의 연수생이 입국

○ 스리랑카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에 계기로  
노동고용부 해외고용국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총괄하고

- 전국의 JobsNet을 통해 구직자를 상시 모집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.

※ JobsNet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취업알선 정보망으로 전국에 17개의 접수창구가 있으며 on/off line으로 구인·구직신청 접수 및 관리, 취업알선 담당

○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스리랑카 새정부 출범 후 최초로 체결되는 정부간 협정으로 스리랑카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및해외고용부장관이 직접 방한·서명하게 되었다.

※ 스리랑카의 경우 '96년부터 '01년까지 약122만명의 인력을 쿠웨이트 등 해외로 송출

□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으로 경제, 인력이동,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

- '04년 3월말 현재 12,798명(불법체류자 제외)이 국내에 취업하는 등 인력분야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.

※ '93년 말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'04.3월말 현재 총32,131명의 연수생이 입국

○ 베트남은 노동보훈사회부에 해외인력센터를 신설하고 지방정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등

- 정부주도하의 인력송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밝힘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.

- 특히, 지난 1월 16일 직업훈련, 산업안전, 사회보험 분야에서 한-베트남 정부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「한-베트남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」가 이미 체결된 바 있어
  -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의 노동분야에서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.

□ 양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

- 연령(18~40세), 경력, 한국어능력 수준,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
- 무단이탈 방지,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(기관)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
-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'04.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다.

□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,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, 명부 송부 시기, 사전교육 절차·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중순까지 확정, 송출국가에 통보하기로 하였다.

- 현재 고용허가제 전체 쿼터는 25천명이나 각 국별로 약 6천명 내외로 구직자 명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며(총50천명 규모 유지) 사업주 선호도 등에 따라 25천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.

※ 6월 중순경 구직자 명부 작성용 전산 프로그램을 양해각서 체결국가에 배포 예정

□ 이후 태국, 인도네시아 등과 6월 3일과 4일에 실무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6월 10일경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이다.

<붙임>

## 베트남, 스리랑카와의 양자관계 현황

(단위 : 건, 천달러, 명)

| 구 분         |       | 베트남       | 스리랑카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수교일자        |       | 1992.12.  | 1977.11. |
| 교역현황        | 수 출   | 1,732,000 | 300,000  |
|             | 수 입   | 380,000   | 40,000   |
| 투자현황        | 투자건수  | 579       | 141      |
|             | 투자금액  | 2,494,189 | 693,475  |
| 국내 체류<br>현황 | 연 수 생 | 1,987     | 1,555    |
|             | 연수취업  | 4,138     | 960      |
|             | 비전문취업 | 6,673     | 1,514    |
|             | 소 계   | 12,798    | 4,029    |

※ 국내 체류 인력 현황, 투자 현황 등은 '04.3월말 현재 통계